

<http://dx.doi.org/10.17703/JCCT.2019.5.1.51>

JCCT 2019-2-7

## 부패범죄의 현황과 대책연구:사이버폭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Violence and Countermeasures on Cyberspace Corruption

김택

Taek Kim

**요약** 이 연구는 언어 공격과 같은 폭력 행위와 사이버 폭력, 개인 정보 침해와 같은 다른 폭력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학교 폭력으로 인해 청소년 폭력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괴롭힘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폭력의 성격을 고려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토킹 피해자들이 사망사건도 발생했을 정도로 심각했다. 이 연구는 명예훼손과 인격의 명예 훼손 문제를 조사하고 문제를 규명하려고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법을 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 판례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사이버 명예 훼손과 인격 모독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첫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을 구별하고 싶다. 둘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이버 명예 훼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범죄 정의 체계에 대한 모욕죄를 고려할 생각이다. 셋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주요어** : 사이버폭력, 사이버 대책방안,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법 모욕범죄, 사이버폭력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violent act, such as verbal offensive and other acts of violence such as cyber bullying,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Online bullying is seriously taking place online, as juvenile violence is seriously debated due to recent school violenc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eek countermeasures by considering the nature of cyber violence in cyberspace, particularly when stalking victims in cyberspace have died from stalking. The study examines the problem of defamation and defamation of character and tries to identify problems. Measures were taken to enact cyber defamation laws. To this end, the Commission analyzed cases of defamation and defamation of character and considered legal precedents. The study intends to study cyber defamation and defamation of character. First, I want to differentiate between cyber libel and defamation of character. Second, I intend to raise the need for cyber defamation of cybercrime and consider the offence of contempt fo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ird, seek ways to protect against cyber defamation and defamation of character.

**Key words** :Cyberspace Violence, Countermeasures, Defamation of character,cyber defamation laws,offence of contempt fo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yber bullying

\*정회원, 중원학교 경찰학과 (동국대 경찰학박사) (제1저자)  
접수일: 2018년 9월 22일, 수정완료일: 2018년 10월 28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26일

Received: September 22, 2018 / Revised: October 28, 2018

Accepted: December 26, 2018

\*Corresponding Author: lasecurity@naver.com

Dept. of Police Administration / 5, Dongburi, Goesan-eup,  
Goesan-gun, Chungbuk, 367-805, Republic of Korea

## 1. 서 론

### 1. 연구목적

사이버 폭력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 이미지 기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등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 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하는 폭력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이버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성 폭력, 사이버 스토킹, 협박 공갈 및 기타 폭력행위 등이 포함된다[1].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소년법개정논의가 진지하게 숙의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SNS 등 온라인상의 괴롭힘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상의 폭력을 사이버불링이라고 하는데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SNS와 휴대전화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폭력은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성희롱한 학생들에게 유죄 판결한 사례를 볼 수 있듯이, 사이버상은 내용의 보존이나 유출이 용이한 공개적인 공간으로 판단하여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또한 대화방에서 비방하는 사람을 동조하거나, 같이 조롱하였을 경우에는 함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도 명백한 학교 폭력이다[2]. 사이버 상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는 컴퓨터 범죄의 대표적인 폭력인데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돼 있다. 현재 ‘사이버 모욕죄’는 별도로 규정된 법률은 없고 형법의 모욕죄가 적용되고 있다. 김종철은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적인 명예’가 보호 대상이 다고 보면서,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필요로 하지만, 모욕죄는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욕설과 같은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고 본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3].

2008년 정부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의 범위를 기존의 접속건수 3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이트에서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이트로 확대 하는 한편, 형법상의 친고죄로 구성되어 있는 모욕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사이버모욕 죄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4].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을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사례를 들어 구별하고자 한다. 둘째, 사이버모욕죄의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형법상 모욕죄를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죄 문 제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사이버모욕죄 법제화를 위한 방안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 판례를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 3. 문헌연구

이윤식(2013)은 인터넷범죄와 사이버 범죄의 구분이 쉽지 않다고 보며 인터넷범죄가 컴퓨터 등 네트워크 접속 가능 단말기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범죄를 의미한다고 보며 사이버범죄는 포괄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았다. 컴퓨터에 의한 자료 자료처리 과정과 관련한 위법행위인 컴퓨터범죄를 포함하는 정보통신 공간에서 이뤄지는 모든 범죄행위라고 보는 견해와 정보통신 공간에서 컴퓨터 자료 또는 컴퓨터 시스템을 불법으로 침해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저지르는 불법행위의 총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병인(2000) 백광훈(2000)은 인터넷범죄와 사이버범죄를 통일한 것으로 보았다[5].

문시아(2012)는 표현매체인 인터넷공간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하면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며 익명의 표현의 자유는 언론자유와 핵심으로 보았다. 문시아는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였는데 1960년 미국연방대법원은 Talley v California 사건에서 전단배포자의 신원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표현의 권리(right to anonymous speech)를 침해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6].

정한라(2013)는 국내외 사이버폭력사례와 각국대응 방안을 연구하면서 사이버폭력은 물리적인 힘이 아닌

사업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고 익명성 때문에 가해자가 느끼는 죄책감이 작아져 폭력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정한라는 폭력에서 가해자 범주에 속하던 사람도 충분히 사이버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요소이고 사이버폭력은 인터넷의 속성에 기반을 둔 빠른 전파성 시공간 제약 없는 가해성, 피해 기록의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7].

박덕순은 사이버모욕죄를 연구하면서 사이버 상에서 욕설이나 비난 인신공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국민들이 위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범죄의 방지를 위한 홍보예방을 위한 사이버모욕죄 신설이 대두되었는데 현재의 모욕죄가 사회적 권력으로부터의 비판이나 비평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데 이를 가중처벌 하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은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반대 측 여론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다[8].

이승현·강지원·이원상(2015)은 청소년사이버폭력 대응방안 연구에서 사이버폭력은 현실공간에서의 폭력 개념에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가지는데 이것이 폭력의 개념과 결합하면 피해자에게는 다양한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하게 하는 사이버폭력의 유형이 창출된다고 보았다. 특히 사이버 폭력은 현실공간에서의 행위와 결합하게 되며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스토킹이 현실공간의 스토킹과 결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까지 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사이버폭력의 특징을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9].

## II. 현황

2008년 10월, 정부는 사이버상 모욕 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0].

배우 최진실의 사망이 이 법의 입법 계기가 되었다고 하여 국회에서 '최진실법'이라는 별칭이 붙었으나 최진실 유족 측의 실명 사용 중지 요청에 따라 사실상이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3] 다만 일부 기사에서 사이버 모욕죄와 최진실법을 병행 표기하는 경우가 있었

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예전에도 있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2008년이었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사이버모욕죄 신설), 형법 개정안(모욕죄 강화), 기타 대안들이 거론되었으며, 부작용을 우려하여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있다.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도 핵심 관건인데 찬성측은 기존 모욕죄 등에서 규정한 처벌이 너무 약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여 가장 처벌해야 한다.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모욕죄 등으로 재판 받은 피고인 중 절반 이상이 벌금형 등 가벼운 재산형을 받았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2004년 837건에서 2007년 2천 106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욕설 정보 심의사건 수도 2006년 2천 74건에서 2007년에는 3만 5천 288건으로 17배 이상 늘어났다. [11].

그러나 기존 모욕죄 등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 가칭 최진실법은 사이버모욕죄나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아니라 자살예방과 관련된 법이어야 고인을 추모하고 급증하는 자살을 막을 수 있다. 현행법에 사이버 모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도 또 도입하지는 것

은 법치주의 원칙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12].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 장치로 남용될 수 있다.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하거나,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13].

역사적으로 모욕죄는 위정자를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였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 등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된다면 혐오스러운 욕설 이외에도 풍자적 표현, 완곡한 표현, 다소 거친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되도록 자의적 또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으며,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모욕죄는 사라지는 추세이다 [14].

사이버폭력은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 악성댓글로 대표되는 행위를 일삼는 사이버모욕,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개하거나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하는 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

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사이버폭력,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괴롭힘을 행사하는 사이버스토킹,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학생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있다[15].

표 1. 사이버폭력 유형  
Table 1. Cyber violence Pattern

Assaulter	many assaulter to violence in cyberspace
Spread	rumour,false can be speedy
limitless assaulter	24hour expose
permanently data	difficulty in erase and fear
violence with secrecy	violence is private and happen to secrecy
insult	insult verbal on internet
defament	false fact spread
sex assault	shame and hated voice photos
stalking	fear and anxious voice letters

source: chung, hanna, 2013, internet promoting institute,2013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국내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람은 모두 3만6931명이나 된다.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람은 2010년 8901명, 2011년 1만1590명, 2012년 1만5617명, 2013년 1만8471명, 2014년 2만9470명 등으로 매년 급증세다. 10년 전인 2006년(2735명)과 비교하면 13배 이상 폭증했다.

모욕죄 고소가 늘어난 것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댓글을 통해 쉽게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별 생각 없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다가 고소되는 경우다.

특히 사이버 상에서 모욕을 느끼거나 명예훼손을 당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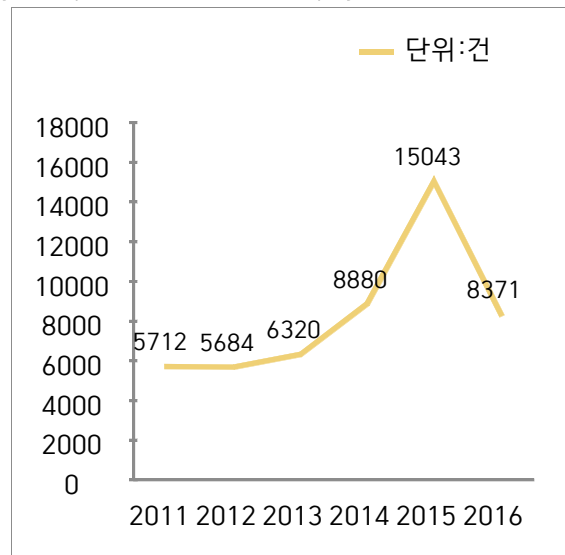
사람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집단 소송도 불사한다. 예컨대 최근 배우 박시후는 자신과 관련한 기사에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문구로 댓글을 단 악플러 76명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던 홍가혜 씨는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 1100여명을 한꺼번에 모욕죄로 고소했다.

최근엔 경찰이나 공무원이 일반인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경찰이 공무원집행 중 들은 욕을 참지 못해 직접 고소하는 것이다.모욕죄 고소가 급증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실제 ‘기소’되는 건수는 급감하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전체 고소된 3만6931명 가운데 9324명만 기소했다. 기소율이 25% 밖에 안 된다. 2만8470명 모욕죄가 접수돼 1만1229명 기소됐던 2014년보다 오히려 기소된 사람은 더 줄었다. 기소율은 2013년(기소자 9418명)엔 51%, 2014년 기소율은 39%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16].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사건 발생 건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관련 사건은 총 1만 5043건으로 2014년의 8880건 대비 69.4% 증가했다.

인터넷 상의 욕설은 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에 규정돼 있다.

그림 1. 사이버언어폭력  
Fig. 1 Cyber defamation and bullying trends



Source:National Police Agency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검사가 수사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단 얘기다.

인터넷 상의 악성댓글이나 욕이 모욕죄에 해당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감을 느낄 만한 발언이다.

#### 1. 공개필요성(Necessity of Open)

공연성은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악성댓글을 달거나 욕을 한 경우 성립한다.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이나 게임의 경우 팀 채팅이나 전체 채팅 창에서 발생한 욕설은 공연성이 충족된다. 반면 1:1대화나 비밀댓글을 통한 욕설은 제 3자의 목격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 특정성(Principles of Specification)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는 경우 성립한다. 법무법인 온 세상의 박유빈 변호사는 "함께 게임을 했거나 댓글을 주고받은 특정인을 지목하며 욕설 등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손의태 변호사는 "반드시 사람의 이름을 명시해야만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은 아니며 주위 사정을 종합했을 때 누구를 지목했는지 알 수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 3. 언어폭력(Principles of verbal bullying)

대부분의 욕은 모욕감을 느낄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 악성댓글의 경우 개별적 발언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판단 기준에 대해 손 변호사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으로 직접적으로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만한 경멸감을 나타낸 것이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라며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라면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상 욕으로 고소를 당해 모욕죄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처벌받는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초범일 경우 일반적으로 3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며 욕설의 내용, 횟수, 수위 등에 따라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 경찰의 수사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악성 댓글 중 반복적 욕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가족 구성원을 비하하는 표현 등은 횟수에 관계 없이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17].

### III. 문제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는 형법 상 범죄와 달리 인터넷 등을 통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 기록이 모두 남아 처벌의 증거를 찾기도 쉽고 전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형법 상 명예훼손죄보다 엄하게 처벌받는다.

다만 '공공연하게'라는 요건이 있는데 '덧속말'에 대해서는 부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대일 대화방'의 경우엔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안심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전과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포한 내용이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사실일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형량은 대부분 벌금에 그친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해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죄'만 있고 '사이버 모욕죄'는 없다. 일반 형법 상 모욕죄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사이버 모욕죄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반대론에 밀려 좌절됐다. 따라서 현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벌어지는 '모욕행위'는 사이버 모욕죄가 아니라 일반 형법으로 다루지고 있다 [18].

온라인상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모욕과 비하 발언,

욕설 등은 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다. 하지만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비방은 현행법상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모욕죄는 특정 개인을 한정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 관련 기사에 일상적으로 달리는 ‘맘충, 김치녀, 메갈녀, 꽃뱀’ 등의 욕설 및 비하 발언을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다.

모욕죄(형법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 유무 등의 구성요건이 필요하다. 공연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 제3자가 보는 공개된 장소이며, 특정성은 모욕대상을 꼬집어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모욕죄에서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남성 중심적 사회구조 아래서 법적 권리를 찾는 이는 대체로 남자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여성은 법적 권리를 찾는 데서도 배제·소외된다는 것이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여성들은 너무나 일상적으로 혐오발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법적으로 문제제기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비하·혐오발언을 듣는 것이 익숙지 않은 남성들은 ‘한남충’이란 말에도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을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해자를 고소하려는 여성에게 경찰이 보이는 차별적 의식과 행동은 여성을 위축시켜 자기검열을 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이 정도로는 고소가 되지 않는다’ ‘고소해봤자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경찰의 지레짐작이 여성의 법적 권리의식을 낮춘다는 것이다[19]. 2016년 2월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등에서 사실을 적시해 명예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개정 전)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다.

당시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지나치게 진실한 사실에 대한 표현행위를 규제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제약당하고 있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특히 징역형까지 가능한 현재의 처벌정도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합헌 결정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기조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선 법원에서도 개인 간의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조각해 무죄판결을 내리는 하급심 판결이 늘고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해, 2019년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사기관이 명예훼손죄를 자의적으로 수사·기소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동일 변호사(김동일 법률사무소)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훼손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보다는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어서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20].

## IV. 정책대안

### 1. 제도적 방안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하지만 형사소송절차에서 디지털증거의 생성과 활용이 전체의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은 아날로그 식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3항은 디지털 증거가 매우 중요함에도 디지털 증거의 압수에 대한 방법을 단편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률에 규정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이 지침을 근거로 운용되고 있다. 사이버폭력은 일반적인 폭력의 약간 특수한 정도의 사안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이나 일부 규정에 다소 처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이버폭력은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21].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 적인 권리인데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 경멸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는 추산적인 의미가 강하다[22]. 대다수 국가는 이를 범죄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도 2008년 사이버모욕죄신설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이버 모욕과 명예훼손죄를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분산돼 있어 이를 구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2. 국제협력방안

세계적으로 인터넷환경이 구축되고 그에 따라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증하면서 인터넷 공간에는 음란 도박 사이트 등 불법 유해 정보가 만연하게 되어있다.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의 흐름이 국경 없이 넘나들고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등장하고 사라진다. 청소년 유해 및 불법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네트워크간의 혼잡 속에서 전파 유통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은 인터넷의 기술적 교묘함과 맞물려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유해 불법유포자나 범죄자를 찾아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유럽연합은 2006년 그리스에서 유럽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기관을 설립하여 다중 언어 정보공유, 경고시스템의 실행가능성 조사 및 이를 통한 효율적 사이버 공격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OECD도 2001년 사이버안전 워크숍국제회의에서 정보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안전이라는 주제로 사이버윤리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의 수사와 기소 및 관할 관한 절차법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의 효과적 처벌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사이버범죄자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과 효과적 수사를 위한 국제사법 공조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약에 수용함으로써 사이버범죄의 수사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였다[23].

### 3. 윤리교육적방안

사이버폭력(학교폭력) 예방 집단교육은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의사소통의 증가로 사이버 폭력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예방 교육을 통하여 사이버 폭력 등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 유용하다 [24].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과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 등의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교화적 수준이나 주입식 교육으로 사이버 폭력을 대하는 방식은 아이들의 인지적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나 원인을 해결하기는 어렵고

사이버 폭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나타나 는 것은 아이들이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현실 세계에서 긍정적으로 소통하고 문제

해결 방식을 익히는 것이 관련이 없는 듯해 보이는 사이버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소통과 문제해결 방식의 전제 조건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상대와의 차이를 ‘맞고 틀리다’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실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식 필요하다고 본다[25].

## V. 결 론

지금까지 사이버폭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사이버 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제도적 법적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는 공감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에 대한 법적 처분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이버폭력의 법적인 대처방안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모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육적 문화적 예방교육도 아울러 중시되어야 한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환경을 대한 통합적인 정부정책이 기대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반폭력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 References

- [1] Lee, Yoon Sik.Public Information Management Theories,Dae Young MunHwa Sa Pub. pp200-228,2013.
- [2] Choi, Jun, Online's Violence-Cyberbullying-, News Story, 9,8, 2016.
- [3] Kim Jong Chul,, Blame for partnersID, Dong A press6,23,2015.
- [4] Jin Sung Woo,, Cyber insults never nonself sue, reporter newspapers,10,22,2008.
- [5] Lee, Yoon Sik.Public Information Management Theories,Dae Young MunHwa Sa Pub. pp200-228,2013.
- [6] Moon Si A, A study on internet expression and Slander of honor offense, Kyung sang University ,pp90-195, 2012,
- [7] Chung Han Ra(2013) Cyber violence case and Countermeasures in the other countries pp.

- 32-96,2013,
- [8] Park Duk soon, A review of the adequacy of the current insults : The Master's thesis on cyber insults. HanKyung Univ. pp1-19, 2016.8
  - [9] Lee Seung Hyun, Kang Ji Won, Lee Won Sang, A Study on the Types and Responses of Youth Cyber Violations 60-179,2015
  - [10] Hnnara Party, Cyber Injects of Cyber Offerings, Money Today,8,28,2008
  - [11] Opinion on cyber insults, Yonhap news,10,10,2008
  - [12] Cyber defamation, HanGeoreah,2008., Court of the constitution, Decision ,92hun 813
  - [13] Cyber defamation, wikipedia.org
  - [14] Cyber defamation and deterioration, OmyNews, 11.112008.
  - [15] SeoGyung won, Cyber violence case and Countermeasures in the other countries pp. 32-96,2013.
  - [16] Park Il Han, A ,speed Peorid on verbal violence, Korea Herald,4,24 2016
  - [17] Song Min Kyung, Internet Game insult can be sue, Money Today, the L Report,1.25,2016.
  - [18] Song Min Kyung,, internet insult to people,Money Today the L Report,101.112016
  - [19] Kang Poo Reum, for the can be more fair society,Women newspaper,7.24,2017
  - [20] Yoo Dong Joo,Song Min Kyung,Jang Yoon CHUNG, facts controversy over defamation of reputation ,monet today the L Report,9.28,2016
  - [21] Lee Seung hynu,Kang Ji Hyun, Lee won Sang, Juvenile cyber violence Pattern and Countermeasures,pp19-179,2015
  - [22] Lee Jae Sang, Penal Law, p 200,2012.
  - [23] Lee, Yoon Sik. Public Information Management Theories, Dae Young MunHwa Sa Pub. pp219 -227, 2013
  - [24] Kim Soon Bok, Cyber Violence and Countermeasures, News,EDU,9.13,2017
  - [25] Kim Hyung Tae, Cyber is a reflection of reality, diversity in education, HanGeoreh, 8.7,2017

※ 이 논문은 중원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2017-002)